

Translate Powered by Google

Choose a language

Korean

Back to Original

# 대통령의 서한

2026년 1월 31일

## 이민 집행 및 PTA

### 학부모회 임원 여러분께,

이 편지는 제가 써본 편지 중 가장 복잡하고 심각한 편지 중 하나입니다. 지난 몇 달간 지속된 이민 단속 조치와 최근 미니애폴리스에서 벌어진 비극적인 사건들, 그리고 우리 주에서 증가하고 있는 여러 활동들은 우리가 이전에는 생각해 보지 못했던 질문들을 던지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학교에 가고 오는 것을 두려워하며, 매일 자신이나 친구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 불안해합니다. 이러한 사건들은 아이들의 교육뿐 아니라 정신 건강과 전반적인 행복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는 학부모회(PTA)에서 우리가 개선하고자 노력하는 모든 것을 위협합니다.



아시아사피, 2025년 입법 총회에서 우리 대의원들은 [이민자 가족, 아동 및 청소년을 위한 권리와 서비스에 관한 결의안 18.51](#)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결의안은 우리 모두가 옹호 활동의 지침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중요한 결의안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주 및 연방 의원들에게 꼭 연락하시고, 우리의 숫자와 여러분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활용하여 우리의 목소리를 크게 전달하세요! [워싱턴주 PTA](#)와 [전국 PTA](#)에서 제공하는 행동 알리를 신청하세요. 이 알림은 시의적절하며 주 및 연방 의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역 사회를 보호하기 위해 직접 행동에 나서고 싶어 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명확한 답변과 단계별 지침을 원하시는 마음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WSPTA는 그러한 절대적인 지침이나 보장을 드릴 수 없습니다. 상황이 급변하고 있고, 많은 분들이 당연하게 여겨왔던 권리와 보호 조치가 무시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전례 없는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WSPTA는 법률 자문 기관이 아니므로, 각 PTA는 다른 조치를 취하기 전에 법률 자문가와 보험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워싱턴주 학부모회(WSPTA)는 전국 학부모회(National PTA)와 협의하여 2026년 1월 29일 현재 다음과 같은 지침을 마련했습니다.

- 모든 학부모회(PTA)는 비정치적이라는 점을 명심하십시오. 따라서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것으로 인식될 수 있는 단체의 자료, 물품, 광고 등을 배포하거나 정당 단체와 협력하는 등 비영리 단체로서의 지위를 위태롭게 할 수 있는 활동에 학부모회를 참여시킬 때는 주의해야 합니다.
- 학교 및 교육청 관계자들과 이민 단속 요원이 학교 부지에 나타날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반드시 논의하십시오. 모든 교육청은 수업 시간 중에 이민 단속 요원이 학교 부지에 나타날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한 정책과 절차를 마련해 두어야 합니다. 교육청의 정책 및 절차는 교육감실에서 제공하는 지침을 따라야 합니다. 만약 교육청에 방과 후 행사와 관련하여 따라야 할 절차나 지침이 없다면, 교육청과 협력하여 계획을 수립하기를 권장합니다.
- 만약 학교 부지 내에서 열리는 학부모회 행사(수업 시간 외) 중에 이민 단속 요원이 나타나고, 현장에 학교 관리자가 있다면, 교육청의 계획을 따라야 할 수도 있으므로 관리자에게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 워싱턴주 학부모회(WSPTA)에서 방과 후 학교 운동장에서 열리는 학부모회 행사 중에 이민 단속 요원이 나타나는 문제에 대한 문의가 많습니다. "공공장소"의 정의가 지역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문의가 더욱 복잡해 집니다. 이민 단속 요원이 접근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자세히 설명하는 워싱턴주 법무장관실 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문서에는 다양한 상황에 대한 예시가 나와 있습니다. 법무 [장관실 웹사이트](#)에서 발췌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이민국 직원이 법원 명령이나 판사가 서명한 영장 없이 사적인 공간에 들어오는 경우( [이민국 집행 문서 샘플](#) 참조 ), 직원에게 밖으로 나가달라고 요청하고 수색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사 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 직장에서는 허가 없이 직원 전용 구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 학교에서 학생들은 허가 없이 교실, 개인 사무실, 기숙사 등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않은 구역에 출입할 수 없습니다.
    - 개인 교통수단이나 고객의 출입이 제한된 사업장 내에서는 이민 단속 공무원이 동의나 허가 없이 출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법무장관 웹사이트에 게시된 문서에 따르면, 가족, 학생 또는 행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의무는 없습니다. PTA 자원봉사자는 학교나 교육구를 대표하여 발언할 권한이 없다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침착함을 유지하고 최대한 안전에 유의하십시오.

PTA로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지금 바로 취할 수 있는 몇 가지 단계를 소개합니다(편지 말미에 링크가 있습니다).

- "권리 알아보기" 정보를 가족과 공유하세요.
- 신뢰할 수 있는 지역 사회 단체나 교육청에서 제공하는 이민자 가정을 위한 자료를 공유하세요.
- 학교 교육청에 이민 단속 조치 또는 학교 인근에 이민 단속 요원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대응 절차에 대해 문의하십시오.
- 학교에 이민 단속 요원이 학교 부지에 나타났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한 정보와 교육을 받았는지 문의해 보세요.
- 지역구 의원들에게 연락하여 이민자 가족의 권리를 보호하고 교육, 식량, 의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권을 유지하도록 요청하십시오.

아는 아이들, 이웃, 친구, 그리고 지역 사회가 피해를 입는 것을 보고 그저 돕고 싶은 마음에 이러한 제약이 느껴질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도움을 주고자 하는 지역 사회와 소통하여 그들의 필요가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이 항상 중요합니다. 또한 행동에 나서기 전에, 당신의 행동이 지역 사회에 불안감을 가중시키거나 의도치 않게 가족이나 자원봉사자들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지침은 PTA라는 조직에 적용됩니다. PTA 지도자와 회원들은 *개인* 자격으로 민주적 절차에 자유롭게 참여하고, 보다 정치적인 단체와 협력할 수 있습니다. 만약 PTA에 해를 끼치거나 향후 학교 공동체를 위해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제한할 수 있는 활동에 참여하는 경우, PTA 대표 자격으로 행동하는 것인지 아니면 개인 자격으로 행동하는 것인지에 대한 오해가 없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학부모회(PTA)라는 이름 아래, 우리는 힘을 모아 주 정부와 연방 의회의 정책 결정권자들이 우리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우리를 위해 일하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과거에 만족스러운 반응을 얻지 못했더라도, 우리의 옹호 활동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연락할 때마다, 그것은 학생들을 위한 변화를 만들어내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우리가 가장 잘하는 일, 즉 정보를 공유하고 교육하며 지역 사회를 연결하여 *모든 아이들이 성장하고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합시다!*

함께 봉사하겠습니다.  
토리 에머슨, 워싱턴주 PTA 회장

본 자료 링크 목록은 법률 자문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법률 관련 질문이 있으시면 변호사와 상담하십시오.

- 참고 자료 링크:
- 이민자 지원 센터: <https://www.ilrc.org/community-resources/know-your-rights>
  - 북서부 이민자 권리 프로젝트: <https://nwirp.org/resources/kyr/>
  - OSPI <https://ospi.k12.wa.us/policy-funding/equity-and-civil-rights/migration-students-rights-attend-public-schools>
  - 워싱턴주 교육부(OSPI)의 2025년 1월 학교 지침: <https://ospi.k12.wa.us/sites/default/files/2025-01/protections-immigrant-students-washington-public-schools.pdf>
  - 워싱턴주 법무장관실: <https://www.atg.wa.gov/know-your-rights-civil-immigration-enforcement-washington>
  - 이민자 청소년 및 아동 안전 계획 (LCYC와 DCYF 협력): <https://static1.squarespace.com/static/533dcf7ce4b0f92a7a64292e/t/67a3a7a0739586096f2e67ba/1738778531988/2025+Immigrant+Safety+Plan+for+Youth+and+Children.pdf>